



실향민



ICRC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동아시아지역대표단
北京市建國門外大街9號齊家園外交公萬B2
우편번호: 100 600
전화: +86 10 8532 3290
팩스: +86 10 6532 0633
이메일: beijing.bej@icrc.org
웹사이트: www.icrc.org
©국제적십자위원회, 2010년 3월

표지사진: Thierry Gassmann/ICRC



Christopher Anderson / Magnum Photos

무력충돌이나 기타 폭력상황에서 실항에 대한 최선의 예방조치는
민간인의 권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Boris Heger/CRC

국제인도법

1949년 제정된 제네바 4개 협약은 국제인도법의 토대를 이루고 있으며, 2006년 8월 이후 이미 전세계 모든 국가(19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다. 제네바협약은 1977년 채택된 두 개의 추가의정서와 2006년 채택된 추가의정서 등의 추가적 협정을 통해 보완되었다. 다수의 국제인도법 조항들은 현재 관습법, 다시 말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 규칙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향민에 대한 보호 및 원조

전쟁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자국 내 실향민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특히 인도적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당연한 것으로써 실향민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복되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향민들은, 전투 중이든 다른 곳에 피신해 있는 동안이든 또는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곳에 정착한 그 순간조차도, 수많은 위험요소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실향민, 특히 아동과 노인, 임산부 중 사망자수는 종종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으며 뒤에 남겨진 자들과 떠난 실향민들을 수용해야 하는 공동체 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추가적인 문제를 양산해 내고 있다.

국내 실향문제는 때로는 무력충돌 중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권법과 같이 폭력상황에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다른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민간인이 분쟁지역을 탈출할 때, 충돌 당사국들이 국제인도법상의 민간인의 권리를 간과하거나, 더욱 심하게는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 목표로 하는 상황 등이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국제인도법은 명시적으로, 어떤 무력충돌 당사자라도 민간인들로 하여금 집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타 민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하게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실향민을 보호하고 원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Anne Rochegudey/CRC

법적 체계

국제인도법은 민간인의 실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민간인에게 적대행위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국제인도법의 규칙들은 실향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인들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규칙들이 위반됐기 때문이다.

특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민간인 또는 민간인의 재산에 대한 공격 금지 및 무차별적 공격 금지
- 전투 수단으로서 민간인을 굶기거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물자들을 파괴하는 행위 금지
- 민간인과 민간 재산에 대한 보복 금지
- “인간방패”로 민간인 활용 금지
- 집을 파괴하여 그 결과로서 실향을 야기하는 집단적 처벌 금지
- 모든 무력충돌 당사국과 당사자들이 구호물품의 원활한 수송과 민간인의 생존에 필요한 원조를 마련할 의무

민간 주민을 보호하는 이러한 기본 규칙들은 국제적·비국제적 무력충돌 모두에 적용된다.

실향민이란 누구이며 법은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는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실향민에 대한 정의 중의 하나는 국제연합이 발행한 ‘국내 실향에 관한 지침 (Guiding Principles on International Displacement)’에 나타나 있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력충돌, 일반적인 폭력 또는 인권 유린 상황, 자연재해나 재난의 결과로, 또는 그 영향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집 또는 평소 거주지로부터 피난을 하였거나 떠나도록 강제된 사람 혹은 집단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벗어난지 않은 경우...”

(UN doc E/CN. 4/1998/53/Add.2, 1998년 2월 11일)

실향민은 난민과는 달리 특정 국제조약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히 국내법과 인권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들이 무력충돌 중인 국가 내에 있다면 국제인도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제인도법 하에서, 민간인의 실향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향사태가 발생한다면, 실향민들은 다른 민간인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지니게 된다. 그들이 이주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는 당국은 적대행위의 영향으로부터 실향민을 보호해야 하며 식량, 식수, 거처와 같은 기본사항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실향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반적 상황

- 직접적 공격과 학대
- 이산가족의 발생과 특히, 아동들이 부모나 친지들과 헤어질 위험 증가
- 여성과 소녀에 대한 강간 및 성폭력 위험 증가
- 건강에 해로운 상황에 대한 노출 증가
- 재산의 박탈
- 기초적인 재화 및 의료행위를 비롯한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 생활 기본요소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수반되는 부수적인 위협에의 노출
- 토착 공동체와 실향민들 사이의 긴장상태 발생 위험
- 수용소 내 무기보유자의 존재
- 강압적 징집
- 안전하지 못하고 적절치 못한 장소에서의 정착
- 안전하지 못한 지역으로의 강제적 귀환

실향민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 상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즉, 식량, 물, 거처 및 기타 생필품, 안전과 신체적, 정신적 안녕, 가족간 연락 재개, 의료 서비스, 교육 및 경제적, 사회적 재활 등이 그것이다. 사람들은 특히, 그들이 피난을 하게 되었을 경우, 그 실향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실향민들은 흔히 무참하게 그들의 일상적 생활환경을 박탈당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특히 그들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친척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인도적 활동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향민들이 실향의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괄적인 접근만이 효과적인 인도적 사업의 두 가지 연동 측면이라 할 원조와 보호가 동시에 제공되도록 보장해 줄 것이다. 실향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항목별, 영역별로 엄격히 구분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실향의 양상

- 도주(실향을 면해보려는 노력이 없었거나 실패한 경우)
- 토착 공동체(host community) 또는 임시장소에 마련된 긴급구호소, 보통은 수용소에 도착
- 토착 공동체, 수용소, 또는 도시조직 내 장기적 정착
- 고향으로의 귀환 및 재통합
- 최종 정착(본래 거주지와는 다른 장소)

실향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주요한 책임은 분명 실향민들이 그들의 거처로 정한 영토의 지배권을 가지는 국가 및 당국에 있다. 책임 당사국은 국민의 실향을 방지해야 하며 실향이 발생했을 경우, 실향민이 보호를 받고 그들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사국은 실향민이 그들의 집에 머무르는데 필요한 조건들(식량, 물, 위생, 의류, 거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보장하고 자신의 집을 잃은 사람들을 보호하며, 상황이 안전해지고 물질적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는 실향민의 귀환을 장려함으로써 이러한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실향민의 이주는 관계당국과 거주 지역 공동체에게 빈번하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관계당국이 실향민을 보호하고 원조하는 의무를 다 할 수 없거나 다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Pedham Yazdi/ICRC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적십자운동)은 각국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사적신월사연맹(연맹),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자회의는 ICRC와 연맹, 그리고 각국 적십자사 대표가 모여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인도적 대응

국내 실항이라는 커다란 문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종합적 대응은 단 하나의 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ICRC는 본연의 독립, 중립, 공평의 원칙을 지켜나감과 동시에 다른 기구들과 효과적으로 협력·조정해 나가는데 전념하고 있다. 수년간, ICRC는 당면한 과제에 가능한 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무력충돌과 기타 폭력상황의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보호와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개념적 접근보다는 실제 자원에 기초하여 다른 인도주의 기구들과 효율적 활동의 상호보완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해 왔다.

인도적 대응에 있어서 ICRC와 협력단체들은 국제적십자적인 월운동의 틀 안에서 실항민의 특정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과 더 광범위한 수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다 일반적인 활동들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실항민들과 자원을 공유하곤 하기 때문에 실항민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큼 주민들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전체 주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실향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대표자회의

“ 자연재해나 기타 재난은 물론 무력충돌과 국제인도법/인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 이주하게 된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대한 보호와 원조를 강화할 필요성과 거주 불가능한 상황을 피하여 이주를 택한 후, 새로운 국가의 취약한 상황 속에서 거처를 찾은 사람들에게 대해 지속적으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난민과 실향민이 그들의 본거지로 귀환하는데 수반되는 심각한 취약상황에 주목하면서...

1. 적십자운동의 구성기구가 그들 각자의 임무에 따라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실향과 관계된 모든 단계 즉, 실향의 방지에서부터 귀환, 재정착, 그리고 재통합에 이르는 모든 과정과 더불어 공평의 원칙에 따라 도착 지역 주민의 필요까지도 아우르는 전 지구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해 나가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면서, 난민과 실향민, 이주민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발전시켜 가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대표자회의 (2003. 11. 30 - 12. 2) 결의사항 제10조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오랜 경험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ICRC는 민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활동의 접근 방향을 정립해왔으며 이는 토착 공동체와 실향민 모두의 가장 위급한 필요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호와 원조에 대한 필요 모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ICRC는 광범위한 수준의 특성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전 분야에 걸쳐 고도로 숙련된 요원들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ICRC는 다양한 실향 단계에 맞추어 대응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인 임무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ICRC의 보호와 원조활동은 만족스러운 생활조건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촉진시키는 것은 ICRC 원조활동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다. 실향민들의 기본 욕구 충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러한 원조활동을 통해 실향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실향민의 존재가 토착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적 어려움을 안겨줌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실향민과 실향민 수용소를 수용할 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향민을 위한 ICRC 활동

- 당국과 무장단체가 민간인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설득해 나가는 중재 작업
- 가족간 연락 재개를 위한 사업
- 식량, 물, 기초 가정용품, 씨앗과 농기구와 같은 구호물품 배급 사업
- 응급처치 및 외과, 위생 및 보건 의료 사업
- 미시경제적 추진사업, 농업 및 가축지원과 같은 생계 지원 사업
- 지뢰사용 금지를 비롯한 지뢰 관련 활동
- 의족 지원

동시에, ICRC는 지역 주민 또는 실항민이 사용하는 기존의 대처방안들은 보전하려 노력하는 반면, 다른 집단간 반목을 증가시켜 긴장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은 지양하고 있으며 상황이 허락한다면 재통합의 촉진도 도모하고 있다. 장기적 실항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요구하며 인도적 기구들에게 그 대응방법과 기간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인도적 단체 및 기부자 단체 내에서 실항민과 토착 주민들의 필요를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ICRC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실제로, 인도적 대응활동을 구분하고 실항민처럼 수혜자를 범주화하여 분리하면 큰 곤란에 처해 있을 수 있는 특정 피해 집단이 등한시 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



수단 다르푸르 게레이다
수용소의 파투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도 않았을 테지요. 제 아이들을 전쟁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고자 한다면 저도 그들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갈 거예요. 저 같은 여자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상상해보세요 - 저는 대낮에 이 벽돌들을 지고 있어요. 햇볕은 참기 힘들 정도지요.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 남편이 살아 있을 땐, 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것이 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저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한번도 학교에 다녔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다르푸르에서 실향을 막기 위한 노력들

3년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7,000명에 달하는 아프리카 연합 평화유지군이 파병되고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재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단 서부 지역, 다르푸르의 안보상황은 수개월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군과 연합 민병대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무장반군 간의 충돌은 공동체간 긴장상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분열 집단들과 소규모이지만 철저히 무장한 수많은 지역 민병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무법상태가 확산되고 있다.

국제인도법 위반이 발생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논밭을 돌보고, 물을 길고, 시장에 나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위험을 무릎 써야 한다. 유목민의 전통적인 이주경로가 자주 봉쇄를 당하고 도적떼들은 그들의 가축을 약탈하고 있다. 지역경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식량 부족은 흔한 일이다. 이백만 명 정도의 실향민들은 도심 인근에 위치한 복잡한 수용소에서 머무르거나 차드 동부에서 원조에 의존하며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이백만 명의 사람들도 무력충돌의 피해를 입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어 감에 따라, 경쟁은 심해져만 간다.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 이후, 많은 원조 단체들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ICRC는 모든 교전 당사자들에게, 민간인과 민간재산, 공공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도 주지시키고 있다. ICRC 요원들은 국제인도법에 대한 위반 혐의 사항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비밀리에 구술 또는 서류상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그들의 대응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나아가, 요원들은 군대 및 다른 무장단체들을 대상으로 인도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ICRC는 무력충돌이 발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다르푸르에 머무르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씨앗과 도구, 기초 생활 용품의 배급, 물 공급, 가족병원 운영, 응급 야전 외과 의료팀 파견, 지방 보건소 대상 의약품 제공 및 면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또한, ICRC는 폭력사태에 의해 발생한 이산가족 간 적십자 메시지를 취합, 전달하고 그들의 재결합을 돕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실항민 수용소에 대한 대규모의 국제 원조 활동이 지속되자, ICRC는 외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지방의 외진 지역의 주민들이 작으나마 다시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고, 궁벽한 지역 내 물자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완화시켜 그들이 수용소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금성 작물의 씨앗과 경작도구를 지원하고 기존의 물 공급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며 가족에 대한 의료활동 등을 제공하면서 ICRC는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식량은 거의 완전 조리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물과 빨감을 찾는 도중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덕분에, 많은 ICRC 활동의 수혜자들은 그들의 마을에 머무르며 수입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콜롬비아 보고타의 엘레나

“ 무장단체들은 우리에게 음식 만들기, 세탁 등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했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떼어 놓겠다고 위협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마을에 내 집을 장만해서 아이들과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

콜롬비아 내 실향민 지원활동

콜롬비아에서 40년간에 걸친 무력충돌과 나날이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실향민과 토착 지역 사회를 비롯하여 국민 전반에 걸쳐 생활조건의 심각한 악화를 가져왔다. 여러 추측에 따르면, 1985년 이후 1백8십만 명에서 3백만에 달하는 콜롬비아 인들이 실향민이 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실향민 규모이다. 거주지가 상습 무력충돌 발생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돌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실향민들은 주요 도시지를 주변으로 빈곤 지대를 형성하며 무리 지어 모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향민들은 도시 환경에 적응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곤 한다. 범죄에 대한 노출, 불안정한 수입, 안전하지 못한 주거, 열악한 위생환경 및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접근 결여 등은 이주 가정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제 요소들이다.

일단 실향민이 되어 이주하게 되면, 농부는 더 이상 그들의 주요 자산인 농토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그들 자신의 식량을 경작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소비품 대부분을 구입할 수 밖에 없지만 반면 수입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들의 기술 전환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이 사람들이 평소 교육이나 보건을 위해 사용했을 자원들이 식량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데, 18세 이하 인구가 전체 주민의 2/3이상을 차지하는 사회에서 이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ICRC는 민간인 보호를 위해 수립된 현재 정부 정책들이 더욱 충실히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향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된 여러 장치들 또한 실향민 가정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강화되고 변화될 필요가 있다. 실향민들이 도움을 구할 때 마주치게 되는 장애물들도 제거되어야만 한다. 기존의 사회봉사 활동과 사회사업들은 새로운 환경과 지역 인력시장에 보다 적합하고 다양한 기술들을 연마해야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등 실향민들의 구체적 필요에 알맞은 대응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ICRC는 콜롬비아적십자사와 함께 지역 안보 상황이 향상될 때까지 임시 수용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새로이 발생한 수만 명의 실향민들에게 식량과 매트, 침구, 위생 용품과 취사도구 세트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ICRC는 보고타에 있는 실향민들을 대상으로 식량과 기타 기본 물품 대신에 배급표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배급표는 선별된 시장과 가게에서 상품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혜자들은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라이베리아 : 실향민 재통합 촉진 활동

2005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파괴된 지역에 있는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이 많다. 2005년 말이 되자, 삼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실향민의 80% 이상이 그들이 머무르던 수용소를 떠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집을 수리하지 못했고, 농작물을 심기에도 너무 늦어 재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분쟁 중 집들은 파괴되었고 농지는 그 후 수년간 잡초로 뒤덮였다. 보건과 학교, 물 공급 및 위생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줄어들거나 존재할 수조차 없었다. 난민과 실향민들은 빈털터리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그들의 귀환이 민족간 반목과 토지 분쟁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다.

ICRC는 자발적으로 라이베리아로 돌아간 수 많은 난민들과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간 더 많은 수의 실향민들을 위해 보호와 원조를 제공해 왔다. ICRC는 많은 귀환자를 흡수한 지역에서 농기구와 여러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보건 시설과 물과 위생 시스템을 재건하거나 새롭게 건설했다.

ICRC는 장기간 지속되는 무력충돌로 피해를 입고 대다수의 실향민들이 한꺼번에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지만 외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던 남동 지역과 같은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ICRC는 또한 의약품을 새로이 공급하고 재건된 보건시설과 직원들의 현장 실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라이베리아 고를루 지역의 로포

“ 로포: 전쟁이 발발하기 전, 우리 가족 모두가 여기에 살았죠.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입을 옷도 충분했고, 우리가 먹을 것을 재배하며 살 수 있었죠. 이곳의 삶은 만족스러웠어요. 우리는 후추 밭도 가지고 있었죠. 남편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어서 저에게 참 잘해줬어요. 하지만, 전쟁 이후 고를루에는 평온한 삶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죠. 식량도 없고 식수도 없고 병원도 없답니다. 아이들을 보낼 학교도 없어요. 돈이 없으면 아이들이 병으로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질문: 그런데 왜 돌아왔죠?

로포: 저는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가족들도 여기 있고요. ”

2005년 후반까지 실항민과 난민 수용소에 있었던 육십만 명에 달하는 라이베리아인들의 절반 이상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이베리아에서 ICRC는 현재, 실항 아동을 그들의 가족과 재결합시키고, 적십자 메시지를 취합하여 전달하고, 씨앗과 도구와 기초 생활 용품을 가정에 전달하며 기초 보건 시설을 재건하고 설비를 확충하며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우물을 보수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분쟁 발생시,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구호활동을 지휘하고 조정한다. 또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인도법과 보편적인 인도주의 원칙을 보급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1863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모체이다.



Norman Ng/CRC



ICRC

Internally Displaced People

0867210T 03.2010 200